

의안번호	제 394 호
의 결 연 월 일	2009 년 월 일 (제 282 회)

**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
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 년 7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7월 2
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특수경력직 공무원(별정직 공무원)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('08.12)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(안 제4조의2)
-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(안 제11조제1항)
-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(안 제11조제2항)
-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 (안 제1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 : 제출 의견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”을 “법 제2조제3항제2호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3제2항 중 “제11조제1호”를 “제1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연 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”를 “당연히 복직된다.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”을 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① ~ ② (생략)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< 신 설 ></p> <p>제11조 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</p> <p>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</p> <p>제11조의2 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의2 (삭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생략)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<u>당연 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</u></p> <p>제12조 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 ①<u>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u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진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 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</p>	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<u>당연히 복직된다.</u></p> <p>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<u>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2조 (공무원의 구분) 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계약직공무원: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

4. 고용직공무원: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제25조의2 (외국인의 임용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41조 (휴직자·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)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,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다만,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제63조 (휴직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

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
3. 천재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(생사) 또는 소재(소재)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
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
5.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

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국제기구·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,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
2.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
3.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
4.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
5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·배우자·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
6. 외국에서 근무·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3조의2 (외국인의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